여수율촌 동양 엔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순위별 공급일정

1순위 : 3.3(목) 2순위 : 3.4(금) 3순위 3.7(월)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여수시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제도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이 다음과 같이 적용됨

구분	분양권 전매	재당첨 제한
전용면적 85㎡ 이하	최초 계약체결일 이후	당첨일로부터 3년
전용면적 85㎡ 초과	최초 계약체결일 이후	당첨일로부터 1년

-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적폐지(209.4.1~2011.3.31)로 기존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1순위 청약제한은 적용됨)

▣ 인터넷 청약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2009년 4월 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30~16:30→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30~18:00→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건축과 제 6042 호(2011. 2. 22)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501-1번지외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상15층 4개동 총 3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일반 특별공급 34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16세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34세대 포함】

▣ 공급대상 면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 지분	최고 층수	공급 세대수		층별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비고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기타 공용면적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2011. 5. 20	(입주지정일)	구 주택형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민영주택	2011000081 (01)	59.7442	59.7442	21.1553	80.8995	2.1806	83.0801	35.26	15층	103동 104동	8	1층	7,460	69,540	77,000	7,700	23,100	46,200	80.8995
											8	2층	7,460	72,540	80,000	8,000	24,000	48,000	
											8	3층	7,460	75,540	83,000	8,300	24,900	49,800	
											94	기준층	7,460	78,540	86,000	8,600	25,800	51,600	
	2011000081 (02)	84.8864	84.8864	30.0582	114.9446	3.0983	118.0429	50.10	15층	101동 102동 104동	16	1층	10,600	99,400	110,000	11,000	33,000	66,000	114.9446
											16	2층	10,600	103,400	114,000	11,400	34,200	68,400	
											16	3층	10,600	107,400	118,000	11,800	35,400	70,800	
											191	기준층	10,600	111,400	122,000	12,200	36,600	73,200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을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 변경하여 표기하였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나, **당해 사업장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정율이 70%로 기준공정시점을 달성하였으므로 중도금을 1회 수납함.**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가구(구,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5%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지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 및 결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10%를 특별공급 함.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입주후 관련법규 허용범위내에서 선택하는 사항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면적(475.81㎡)은 상기 대지 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공통사항

- 신청일시 및 장소
  - ① 일반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2011. 3. 2 (수) (09:00~15:00) / 당사 견본주택
  - ②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2011. 3. 2 (수) (09:00~15:00) / 당사 견본주택
  - ③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2011. 3. 2(수) (09:00~15:00) / 당사 견본주택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에 따라 기존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 당첨자 추첨일시 및 장소 : 2011. 3. 2(수) (17:00) / 당사 견본주택
  - ※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순으로 추첨함.
- 계약체결일 : 2011. 3. 16(수) ~ 2011. 3. 18(금)(3일간, 각 순위 정당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취소된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단, 관련규정 변경시 그에 따름)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신청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34 세대 /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내)

- 신청자격 및 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2.24) 현재 여수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2항【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 2 및 제7호, 제2항 제1호(철거민), 제2호(국가유공자 등),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각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청약저축의 경우 납입인정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가능)

2)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16 세대 / 주택 건설량의 5% 범위내)

- 신청자격 및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2.24) 현재 여수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면서 민법상 만20세 미만의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각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청약저축의 경우 납입인정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가능)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하며,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관련법규 변경시 그에 따름]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 고
계		100	-		
자녀수(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 및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2세대	5	* 한부모 가족의 경우 5점을 부여
무주택 기 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이상~10년미만	15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1년이상~5년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3) : 국토해양부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3)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34 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건설량의 10% 범위내)

- 신청자격 및 요건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2.24) 현재 여수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다음 각 3개항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2) 입주자 저축
    -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각 지역별 청약가능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청약저축의 경우 납입인정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가능)
  -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통계청 자료)

구 분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888,647원 이하	4,229,126원 이하	4,702,698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4,666,376원 이하	5,074,951원 이하	5,643,238원 이하

※ 공급물량을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에 순위에 의해 대상자 선정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위

-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
- 미성년인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 산정방법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내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 포함)한 자녀
  - ②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③ 임신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와 관계없이 자녀수를 1명으로 인정함

- 기타 유의사항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임신의 경우 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출산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 (단, 가구당 월평균 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태아는 태아수에 관계없이 가구원수 1명으로 산정)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만20세 이상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소득도 합산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 준용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혼인신고 이전 출산한 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입증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서류	발급처	비 고
근로자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혹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재직증명서 첨부)	해당직장 세무서	
	신규 취업자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근로자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4)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거주지역별	59.7442㎡	84.8864㎡	-	-	계
일반 특별공급	여수시	11	23			34
다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	여수시	5	11			16
신혼부부 특별공급	여수시	11	23			34
합 계		27	57			84

5)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일반 특별 공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7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의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2.24)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 불가])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2.24)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신혼 부부 특별 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1. 2.24)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함)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 받고자 하는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의료보험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소득입증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공통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02.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2.24) 현재 여수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당첨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9.4.1~ 2011.3.31까지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함.[민영주택]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어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던 24개월이상 납입등의 1순위 요건은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로 단축하여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특별공급(일반/다자녀/신혼부부)			· 해당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구비한 분
	1순위	공통	가점제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추첨제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사실 포함]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됨
		85㎡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 포함) 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1순위가 되신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80.8.29 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이상인 분[동일계좌로 청약하는 경우 최초 청약시 선택한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에 신청가능]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공통	가점제 대상자	· 2순위 청약자 전원
			추첨제 대상자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85㎡이하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
	3순위	85㎡이하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 분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순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특별공급 (일반/다자녀/신혼부부)	여수시	2011.03. 2(수)	당사 견본주택(09:00~15:00)	* 일시 : 2011.03. 2(수) 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1순위	여수시	2011.03. 3(목)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접수시간 : 평일 08:00~17:30	* 일시 : 2011.03. 11(금)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 페이지 게재 (www.npart.co.kr)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 하지 않으니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2순위	여수시	2011.03. 4(금)		
	3순위	여수시	2011.03. 7(월)	* 접수장소 : 우리은행 본.지점 * 접수시간 : 평일 – 09:00~16:00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위 접수는 우리은행 본·지점에서만 가능]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2)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일반 특별공급/다자녀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공 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3. 1·2순위

- 1순위 청약자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1순위 청약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를 가점제, 25%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4.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1.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2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 하여야 함.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이상 ~ 8년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3.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4. 감점 산정기준

감점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①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 기간 점수는 0점이나,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은 없음.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5.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주'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 주택 보유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장기간 보유 특례)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현재 소형.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 8. 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인터넷 신청접수 방법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청약⇒인터넷 청약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인터넷청약⇒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우리은행 본,지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부금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우리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 접수만 가능)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0만원	가능한 여수시/순천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1. 3. 14(월)] 이후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우리은행 본·지점(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자동 이체됨
- 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우리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자의 입회하에 각 주택형별로 공개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m2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부동산→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 접속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1. 3. 11 ~ 2011. 3. 20 (10일간)	2011. 3. 11 ~ 2011. 3. 20 (10일간)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전자금융 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11. 3. 11 ~ 2011. 3. 20 (10일간)	2011. 3. 11 ~ 2011. 3. 20 (10일간)
휴대폰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청약신청시 SMS 당첨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신분 중 당첨자
문자서비스	제공일시	2011. 03. 11 (금) 10: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 정당당첨자 : 2011. 03.16(수) ~ 2011. 03.18(금) (3일간, 시간 09:30~16:0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501-792111	동양메이저(주)건설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지정된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통보하는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일에 불참시 예비당첨자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정당당첨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금(가능한 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 자에 한함)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저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1. 2. 24)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 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유주택이거나(가점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추첨제)
  - 1,2,3순위 당첨자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단, 관련규정 변경에 따름)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 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예비당첨자중 최초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 사업주체의 연대보증으로 지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잔금 정산시 연대보증의 해지업무,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업무절차를 지정법무사(변호사)를 통하여 이행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 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월** : 2011년 7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 및 기관

구 분	면적(㎡)	감정기관	감정금액(도로포함)
사 업 부 지	16,611.50	한국감정원	3,434,693,800원
		경일감정평가원	3,347,720,100원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2)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2)× 0.3025 또는 형별면적(m2)÷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시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건립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후 일정기간 공개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팜플렛 등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등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달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이 시공시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표시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및 창호, 문, 가구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본 공사시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련법령에 적합한 범위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계획 포함) 및 색채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입주자가 입주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후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발코니확장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람.

- * 어린이 놀이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 함
-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 주변 철도, 대로(17호선)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음.
-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 세대내부 및 엘리베이터 홀 사이에 설치된 전실은 공용면적에 포함된 부분으로 외부단열재가 미설치됨.
-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및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음
-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향별·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특히 59.7442㎡ 주택형 중 일부세대는 발코니면적이 기준타입 대비 상이하므로 계약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 단지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형태,색채,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금액단위 : 원 / 부가세 포함)

구 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통신·소방 감리	비 고
회사명	(주)성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동부전기설계감리	(주)21세기엔지니어링	
감리금액	₩193,600,000	₩49,500,000	₩33,000,000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12011-101-0000400 호	₩15,511,2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 및 분양권을 양수한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시행 및 시공 회사

구 분	시행사	시공사	비 고
상 호	동양메이저/건설	동양메이저/건설	
등록번호	서울 – 주택1994 – 0002	서울 – 주택1994 – 0002	

▣ **견본주택 위치**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501-1번지 동양아파트 현장

▣ **분양문의** : ☎1588-8675

분양문의 1588-8675 시행·시공 동양메이저/건설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